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0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4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㈜쿠콘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10.20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, 홍보 및 컨설팅

◦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·광고

◦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・제공하는 업무

◦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의2제4항1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, 제13조의4제4항제3호, 제13조의4제4항제4호